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FAQ

[I] 지원대상 관련

Q.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원가능한가요?

아니요, 태양광발전시설은 금융지원 제외대상입니다. 균형적인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을 위해 '10년부터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Q.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준은 뭔가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자금신청자 기준으로 하여, 신청자가 대기업일 경우 50%이내, 중소기업일 경우 90%의 지원비율이 적용됩니다.

Q.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원 가능합니까?

예, 다만 금융지원사업 취지에 맞도록 민간기업 우선으로 추천됩니다. 하반기 잔여예산 발생 시, 공공기관 금융지원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 국가에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대상이 되는지요?

아니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운전자금의 경우 제조업체만 가능한가요?

예, 운전자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년도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관련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50% 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 지원 가능)

Q. 시설자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해당시설을 위한 건물공사비도 지원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합니다.

Q. 생산되는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는지요?

신재생에너지 관련제품의 경우, 운전자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II] 지원금액 관련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금융지원조건

구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에특자금	생산·시설 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90% 이내 (대기업 50% 이내)
	바이오 및 폐기물분야	5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전력기금	발전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주) 1.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2. 자금용도별 지원규모는 센터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전력기금에서 지원되는 시설자금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한하며, 태양광발전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4. 해외투자시설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Q. 시설자금과 생산자금, 운전자금 구분이 어렵습니다.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소비자)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공급자)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Q. 담보가 필요한가요?

담보는 거래하시는 은행 측에 문의하시길 추천합니다. 은행 측에 담보설정 등 은행의 대출규정에 적합한지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대출가능 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출가능 은행을 선정하셔서 저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센터의 '금융지원사업'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 첨부서류에 은행과 협의 후에 '융자금 대출가능사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센터의 서류 심사 및 온라인/자금심의회 심사를 통과하고 추천서가 발급되면, 자금 대출 전 은행 측의 구체적인 담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Q. 금리가 얼마인지요?

금리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라,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대표대출금리)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합니다. '04년도 이래, 최저금리는 2%('05년 1분기, '11년 1분기, '12년 1분기), 최고금리는 4.75%('08년 1분기)였으며, 현재('12년도 1분기) 금리는 2%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금리변동현황

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	2.0 %			
'11	2.0 %	2.5 %	2.25 %	2.25 %
'10	3.0 %	2.75 %	2.5 %	2.25 %
'09	3.0 %	2.5 %	2.75 %	3.25 %
'08	4.75 % (최고금리)	3.75 %	4.25 %	4.5 %
'07	3.5 %	3.5 %	4.0 %	4.25 %
'06	3.75 %	3.75 %	3.5 %	3.25 %
'05	2.0 % (최저금리)	2.75 %	2.5 %	3.25 %
'04	3.5 %	3.5 %	3.0 %	2.25 %

Q. 금리적용방법?

'11년도 12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20억원 대출한 경우,

· 2.25%(대표대출금리: '11년도 4분기) - 1.25% = 대출금리 1%

· 12월 1일 ~ 12월 15일 = 15일

☞ 11년도 4분기 반납이자 = 20억원 X 1% X 15일/365일 = 82,191,780원

같은방식으로,

· 2.00%(대표대출금리: '12년도 1분기) - 1.25% = 대출금리 0.75%

· 12월 15일 ~ 3월 15일 = 90일

☞ 12년도 1분기 반납이자 = 20억원 X 0.75% X 90일/365일 = 369,863,013원

Q. 지원한도액이 100억원이고 대기업 지원비율 50%까지라는 지원조건의 의미는 대기업은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200억원을 추천 신청하시면 1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50억원 지원하실 경우에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이 100억원이기 때문에 100억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Q. 세제혜택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라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세액공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국세청 126)

Q. 계속사업의 경우, 지원한도액은 연도별 적용되나요?

예, 생산자금 신청을 예로 들면 당해연도 100억원 이내 지원가능하며 익년도 또한 100억원 이내로 지원가능합니다.

[Ⅲ] 제출서류 관련

Q.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알려주세요.

○ 유의사항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한 날짜가 기입되어야만 제출서류로 인정
- 제출되는 서류는 일부만을 제출하지 말고 **서류 전체를 모두 제출**
예) 등기부등본이 총 3장인데 갑구 한 장 만 제출하는 경우(X)
- **원본이 아닌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해야함**
- 스캔 파일은 확장자명을 JPG, GIF, PDF 파일등으로 스캔하여 파일만 첨부
※ 스캔된 파일을 한글, 엑셀 등에 그림 첨부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요망
- **첨부서류의 각서, 계약서, 원본대조필 등의 도장은 모두 일치해야 함**

○ 자금별 제출 서류 목록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①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	○	○
② 각서	○	○	○
③ 용자금 대출 사전가능 확인서	○	○	○
④ 계약서	○		
⑤ 상세내역집계표	○		
⑥ 신재생에너지보급량 근거	○		
⑦ 신재생전문기업등록증	○		
⑧ 관련 인허가사항	○		
⑨ 부지매입관련 증빙자료	○		
⑩ 중소기업확인서	○		○
⑪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당해연도 추정재무제표		○	○
⑫ 해당제품에 대한 매출실적		○	
⑬ 설치 도면, 배치도		○	
⑭ 소요자금 세부내역 근거자료		○	
⑮ 공장등록증, 부지관련 확인서류 등		○	○
⑯ 기대효과		○	
⑰ 사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⑱ 당해연도 매출실적 확인서			○
⑲ 기타: 회사설명자료,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등			○

○ 공통서류

- ① 신청자 사업자등록증(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2012. 1. 1일 이후에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 ② 각서[별지 제53호서식]
 - 각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자금신청을 하여야 함
 - 업체명에는 추천신청서에 기입했던 업체명(개인은 개인명)을 기입
 - 하단의 대표자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명을 서명하고 날인
- ③ 용자금 대출 사전가능 확인서[별지 제54호 서식]
 - 용자금 예정금액은 추천신청액을 표기
 -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은 추천신청액 이상을 숫자로 표기

○ 자금별 제출 서류

-시설자금

- ④ 계약서
 -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사항과 서명날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계약서에는 총 공사금액, 부가세(VAT)별도로 작성해야함
 - 투자소재지는 신청서에 기재한 투자소재지와 일치해야함
- ⑤ 상세내역집계표
 - 집계표 혹은 견적서에 부가세(VAT)포함여부가 기재되어야 함

- 투자소재지는 신청서에 기재한 투자소재지와 일치해야함
- ⑥ 신재생에너지보급량 근거
 -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보급량 산출근거 제시
- ⑦ 신재생전문기업등록증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가 전문기업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 ⑧ 기타 관련 인허가사항
 - 발전사업허가증(수력, 풍력, 연료전지 및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서 등
- ⑨ 부지매입관련 증빙자료
 -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국유지, 국유림일 경우)
- ⑩ 중소기업확인서(세무사, 회계사 확인필)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51호서식]작성 후 첨부
 - 세무사가 사실 증명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호 서식)」 또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공문서」(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확인서 등)로 대체 가능

-생산자금

- ⑪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당해연도 추정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본으로 첨부
 - 추정 재무제표는 결산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업체에 한함
 - 연간매출액(또는 추정매출액)에 당해제품만의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분리매출액(생산월보 등)이 첨부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첨부
- ⑫ 해당제품에 대한 매출실적(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에서 확인본 제출)
- ⑬ 설치 도면, 배치도
 - 설치코자하는 생산시설의 설치 도면, 배치도 등을 첨부
- ⑭ 소요자금 세부내역 근거자료
 - 계약서 및 계약 상세 내역서 등 (유효기간 명기)
 - 투자설비가 외자인 경우는 계약서 또는 신용장 등
- ⑮ 공장등록증, 부지관련 확인서류 등(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대장)
- ⑯ 기대효과
 - 생산시설 투자에 따른 에너지절약(또는 신재생에너지생산)효과 산출
 - 연간 보급량과 해당제품의 보급효과를 기술작성
 - 시설투자에 따른 투자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투자 경제성을 분석하여 투자회수기간 등을 제시
- ⑰ 기타 사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생산시설 공정도 및 공정설명(제품생산을 위한 공정을 공정도로 도식화하고, 공정설명은 자세히 작성)
 -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생산시설 신청시 공장전체 생산라인과 자금신청할 부분을 공정별로 상세히 작성

-운전자금

- ⑱ 당해연도 매출실적 확인서: 해당제품(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전년도 매출 실적 확인서(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에서 확인본 제출)
- ⑲ 기타: 회사설명자료,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첨부

○ 그 외 설비별 추가 제출서류

설비명(사업)	제출서류 목록
수력발전 / 풍력발전 / 연료전지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발전사업 허가증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개발행위허가서(환경영향평가 관련포함) ④ 기타 관련법규에 관한 서류(지자체 허가 등)
지열에너지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② 지열설비 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추천 이후, 최초자금 인출 전 제출)
태양열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태양열이용시설 기술사양서 [별지 제56호 서식]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다만,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KS표시 허가서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서)
폐기물에너지 소각열이용설비/ 폐기물에너지 생산이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집, 소각, 재활용 등에 대한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 (대기배출시설허가증 등) ② 열공급계약서(열판매시만 제출)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 생산이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